

뉴스요약

1. 퀄컴(Qualcomn) 중국에서의 iPhone 생산판매 금지를 도모
애플반소를 제기하여 침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2. 중난대학(Central South University) 3건의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 1억여원의 수익 달성
3. ETC관련 발명특허 1억원 배상액 요구
4. 청도(靑島)에 지식재산권 법정이 설립되었고 현재 여러개의 다지역 관할 지식재산권 법정 설립

퀄컴(Qualcomn) 중국에서의 iPhone 생산판매 금지를 도모 애플반소를 제기하여 침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근래 퀄컴측 대변인의 확인사항에 따르면 퀄컴은 이미 북경지식재산권 법원에 3가지 소송을 제기하여 애플이 중국에서 퀄컴의 3개 비표준필수특허를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중국에서의 iPhone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퀄컴측에서는 애플이 지속적으로 퀄컴의 발명기술을 사용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은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희가 이번에 주장하는 특허는 애플이 해당 iPhone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셀룰러(Cellular) 무선통신기술 외의 퀄컴기술을 대표하고 있다.이런 특허는 애플 자신의 프로세서 유닛을 사용하는 iPhone 제품의 배터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기술 및 iPhone의 “Force Touch”기능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

애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애플은 줄곧 특허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퀄컴의 청구비용은 불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또한 퀄컴의 소송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동시에 애플도 퀄컴에 대하여 특허불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애플과 퀄컴사이의 특허분쟁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미국연방무역위원회는 퀄컴이 더욱 높음 로열티를 받기 위하여 애플에게 자신의 베이스밴드 칩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지적하였다.3일 후,애플은 퀄컴에 대하여 USD 10억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하지만 퀄컴은 이 소송은 근거가 없으며 애플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퀄컴과 애플사이의 특허분쟁은 이미 9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며 여러차례의 오고가는 “공격”과 “방어”는 승부를 보지 못하고 쌍방은 중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이미 올해 1월 25일에 애플은 중국 북경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퀄컴이 칩 업계에서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10억위안의 배상액을 요구하였다.

현재 퀄컴은 iPhone X 발매 전야에 주동적으로 “분쟁의 불꽃(战火)”을 애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시장으로 이끌어 애플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최근 북경지식재산권 법원은 애플회사,애플전자제품상무(북경)유한회사가 퀄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불침해 확인소송 및 일련의 분쟁건에 대하여 수리하였다.원고 애플회사와 애플전자제품상무(북경) 유한회사는 3G/UMTS 와 4G/LTE 를 지지하는 애플 iPhone 과 iPad 제품이 퀄컴회사의 중국 제 ZL200380108677.7 호“전자통신 시스템의 역방향 링크에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방법과 장치”, 제 ZL200580031592.2 호 ”액세스 채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신호를 보내다” 및 제 ZL01809657.3 호 “통신시스템에서 신호를 재송신하는 장치”(이하 안건에 관련된 특허로 약칭)의 특허권에 대한 특허불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애플회사와 애플전자제품상무(북경)유한회사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는 전자제품에 종사하고 있는 유명기업이며 전세계 판매 네트워크에 대한 광범위한 커버를 통하여 애플제품을 포함한 많은 이동통신과 미디어 장치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 퀄컴회사는 이동통신기술의 연구개발과 집적회로 설계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이는 이미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에 “안건에 관련된 특허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에서 발표한 통신표준하의 표준필수특허이며 상기 표준에 부합되는 원고가 제조한 임의의 이동통신과 미디어 장치는 반드시 안건에 관련된 특허를 사용하게 된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였다.이외에 피고는 자신의 공식사이트에 중국 무선통신 필수특허 리스트를 공개하였으며 해당 리스트안의 안건에 관련된 특허를 포함한 모든 특허는 관련 무선통신표준에 있어서 필요로 되는 청구항이 포함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하였다..원고의 제품이 관련 무선통신표준에 부합되는것에 기초하여 피고는 이미 명확히 원고에게 안건에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침해경고를 보냈다.원고도 이미 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권을 행사할 것을 재촉하여 통고하였지만 원고가 기소하기전까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최고인민법원이 특허권 침해분쟁건 심사에 대한 법률 적용의 약간문제에 관한 해석”의 제 18 조 규정에 따라,본 건은 특허불침해 확인소송의 관련 요구에 부합된다.

원고는 피고 퀄컴회사가 공급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칩셋이 애플제품에 조립되어 전문 안건에 관련된 특허 방법을 실시하는것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안건에 관련된 특허의 관련 청구항이 피고의 주장대로 상응한 무선 통신표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일 경우,안건에 관련된 특허의 청구항 기술방안은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칩셋을 통하여 실시하며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칩셋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허권 소진 원칙에 따라 해당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칩셋은 판매후 피고의 관련 권리는 이미 소진하였다.원고는 이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칩셋의 공급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한 것을 고려하여 원고는 안건에 관련된 특허에 대하여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의 특허침해책임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가 없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원고는 북경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안건에 관련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불침해 확인 판결을 내릴것을 법원에 청구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합리적인 지출 200 만원을 배상할것을 청구하였다.현재 북경지식재산권 법원은 이미 기소장,응소 통지서 등 관련 소송자료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해당 건은 진일보 심사중에 있다.

퀄컴과 애플의 특허분쟁은 이미 중국시장까지 확산되었다.

중남대학(Central South University) 3 건의 특허 라이선스를 통해 1 억여원의 수익 달성

중남대학 야금 및 환경학원의 Zhongwei Zhao 교수팀은 “전기화학 디인터칼레이션으로 염호에서 리튬 추출(The electrochemical deintercalation of lithium from Saline Lake)”기술에 관련한 3 가지 특허가 전용실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모회사에 양도하였으며 비용은 1.048 억원이다. 쌍방은 공동으로 플랫폼 회사를 조직하여 플랫폼 회사에서 특허의 산업화와 생산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중남대학의 과학기술성과 전환 정책에 따라 Zhongwei Zhao 팀은 이번의 성과 양도수익 총액의 70%를 획득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리튬자원이 풍부하지만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염호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오직 마그네슘과 리튬의 분리를 실현하여야만 리튬의 규모적인 추출을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새로운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저희는 국가의 수요에 따라 연구작업을 펼치며 리튬 이온 전지의 작동원리를 염호에서의 리튬 추출에 응용하여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하여 기술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그네슘과 리튬을 분리하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분리효과가 더욱 좋고 에너지 소모가 더욱 낮으며 산,알칼리 등 유해배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Zhongwei Zhao 께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번 라이선스의 리튬 추출 기술이다.요해한 바에 의하면 이번의 합작은 2 건의 중국 발명특허와 1 건의 PCT 경로를 통하여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이 관련되며 전용실시권 비용은 총 1.048 억원으로 그 중 화폐성 자금은 2480 만원이고 지분가치는 8000 만원이다.중남대학의 관련 정책에 따르면 연구개발팀은 이번 양도수익 총액의 70%를 획득할 수 있다.

2000 년이래,중남대학은 소유하고 있는 높은 가치의 특허에 의거하여 창립한 기업이 150 개가 넘으며 단 2017 년 상반기에 이미 45 항의 기술양도를 실현함으로써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수익을 실현하였다.

국가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과학기술 성과전환 정책이 완화해지면서 중남대학 뿐만 아니라 산둥이공대학의 Yuzhuo Bi 팀에서 연구개발한 “CFC-폴리우레탄이 들어있지 않는 신형 화학 발포제(CFC free polyurethane foaming agent)”은 20 년간의 전용실시사용권으로 구입되어 5 억원의 고가 라이선스를 창조하였다.동제대학의 Zhanshan Wang 팀에서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고성능 박막 레이저 기기 및 장치(High performance laser thin film devices and device)” 6 건의 발명특허권 양도는 800 만원의 가격을 달성하였고 사천대학의 Qi Wang 팀에서 연구개발한 “MCA 방염제 분자복합 제조기술(Preparation technology of molecular compound MCA flame retardant)”은 이미 전국 20 여개의 기업에서 응용하고 있고 관련 제품은 한국,유럽 등 나라와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3.1 억원의 생산액을 실현하였다.

ETC 관련 발명특허 1 억원 배상액 요구

북경 쥐리 과학기술 주식회사(아래 쥐리회사로 약칭)가 자신의 발명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심천시 진이 과학기술 주식회사(아래 진이회사로 약칭)는 쥐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피고 쥐리회사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원고의 경제손실 1 억원을 배상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최근 북경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이 건에 대하여 공개 심리하였다.

안건에 관련된 쌍방은 모두 ETC 영역에서의 유명회사이다.그중 진이회사는 2004 년에 심천에서 설립하여 올해 5 월에 A 주 시장에 진출하였다.현재 해당 회사의 경영범위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RFID 업종과 전자결제업종의 핵심기술 연구,제품개발,장치제조 등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주요제품은 고속도로 ETC 제품,무정차 다차선 ETC 제품,주차장 ETC 제품과 RFID 기술에 기초한 경로 식별 제품 등이 있다.2010년 2월 1일에 진이회사는 발명명칭이 “전자 요금 징수 OBU의 태양에너지 피드 회로”인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2년 6월 27일에 권리를 부여받았다.(특허번호:201010105622.2) 해당 특허가 바로 안건에 관련된 특허이다.

해당 안건의 다른 당사자인 쥐리회사는 2001년에 설립되어 주영업으로는 ETC무정파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도로교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 및 단말 장치,GPS 차량용 단말,감독 플랫폼을 핵심으로 하는 시리즈 제품,차량 행렬 관리와 통제 시스템 및 GPS 시스템 등이 있다.올해 8월 2일에 쥐리회사는 주식모집 설명서를 업데이트하였으며 IPO에 도전하였다.진이회사는 올해 초에 쥐리회사가 2015년 7월 부터 2017년 6월 까지 무단으로 경영생산을 목적으로 단거리 전용통신의 전자 요금 징수 OBU를 대규모 제조,판매,청약판매하였으며 JLCZ-06,JLCZ-06S 등 여러 종류의 모델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또한 상기 제품의 기술방안은 안건에 관련된 특허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쥐리회사는 상의한 의견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제조,판매한 안건에 연루된 제품이 사용한 피드 회로 기술방안과 안건에 연루된 특허가 보호하는 기술방안이 관련 기술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본질적인 구별이 있으며 기술방안도 다르고 안건에 관련된 특허의 청구항 범위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뿐만 아니라 쥐리회사는 현재 IPO 상장 심사의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으며 진이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상장진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1 억원 배상 요구에 대하여 진이회사는 쥐리회사의 2015년,2016년의 연간보고에 따르면 OBU의 수입은 각 5.2억 원과 4.8억 원이었으며 OBU 수입이 주영업 수익의 85%를 차지하므로 1 억원 배상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하지만 쥐리회사는 안건에 관련된 본 차례 특허는 OBU 핵심특허가 아니며 제품에 대한 기여율은 1%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한 배상액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은 아직 심사중에 있다.

청도(靑島)에 지식재산권 법정이 설립되었고 현재 여러개의 다지역 관할 지식재산권 법정 설립

최고인민법원의 동의 및 회답에 따라 청도시 중급인민법원 내에 전문심판조직을 설립하였고 부분 지식재산권 안건에 대하여 다지역 관할을 진행하게 되었다.어제 오전,청도 지식재산권 법정은 현판식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청도 지식재산권 법정의 정식 설립을 발표하였다.청도 지식재산권 법정은 청도시 (靑島市),동영시 (東營市),연태시 (煙臺市),위이팡시 (濰坊市),위해시(威海市),일조시 (日照市)의 관련 특허 등 7 종류의 안건에 대하여 다지역 집중관할을 진행하게 된다.

직능에 따라 청도 지식재산권 법정은 주요 아래 3 종류 안건을 관할한다.

1. 청도시,동영시,연태시,위이팡시,위해시,일조시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특허,변종식물,회로배치,기술상의 비밀,컴퓨터 소프트웨어,저명상표의 검정 및 독점분쟁에 관련한 제 1 심 지식재산권 민사와 행정안건;

2. 청도시 관할 지역내의 하부 조직 인민법원 관할범위 이외의 제 1 심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과 형사안건;

3. 청도시 관할 지역내의 하부 조직 인민법원에서 심사한 제 1 심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과 형사안건에 불복하여 항소한 안건.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의 담당 책임자는 청도시는 올해 전국에서 첫번째로 국가 지식재산권 강시(强市) 및 창설도시로 확정되었으며 청도 지식재산권 법정의 설립은 청도 지식재산권 심판업무의 한차례의 역사적 도약이며 인민법원이 청도 및 성 전체의 혁신적인 발전 전략에 서비스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소개하였다. 해당 법정은 특허 등 안건의 다지역 집중관할을 실현하고 지식재산권 심판이 더욱 전문화, 집중화되게 하며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환경과 수준이 더욱더 최적화 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최초의 국가 지식재산권 모범도시로써 2017 년 상반기까지 청도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효 발명특허는 19944 건으로 전 성 전체 수량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발명특허 출원량과 권리부여량은 3 년 연속 1 위를 차지하였으며 각 유형의 지식재산권 안건 수량이 쾌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중요 수출 지향형 도시로써 청도의 외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수량은 장기적으로 전 성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비중이 3 분의 1 을 초과하였다.